

경찰의 폭력범죄 피해자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이하섭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관심으로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최근에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를 지원하고, 회복하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의한 범죄피해자는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신체적·심리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장 먼저 피해자를 접촉하는 경찰은 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폭력범죄 피해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One-Stop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신체적·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폭력범죄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폭력범죄 피해자의 욕구를 감안한 서비스지원, 경찰의 폭력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응급처치 실시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범죄피해, 피해자지원제도, One-Stop지원, 폭력범죄

1. 서론

1960년대 이전까지 범죄학의 주요 화두는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 목적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형사사법절차에서도 범죄자의 범죄행위와 범죄자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사법처리가 되는 등 피해를 입은자에 대한 피해회복보다는 피해를 가한자의 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형사사법의 유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보다는 범죄가해자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더욱 증가함과 동시에 가해자의 교도소 출소 이후 피해자에게 공격을 가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 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되어 왔던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63년 뉴질랜드가 최초로 「범죄피해보상법」(the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을 제정한 데 이어 1965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1967년에는 캐나다가 그리고 1980년에는 일본이 관련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배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또한 본격적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물질적 보상 및 배상, 그리고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김용세, 2010; 강은영 외, 2012: 325).

지금까지 피해자의 인권은 형사절차에서 범죄자보다 상대적으로 중시 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실제로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및 매스미디어 및 일반대중으로부터의 3차 피해 등을 당함으로써 지속적인 피해자로 상당한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강은영 외, 2012: 325).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의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많은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기관 중 검찰에서는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사망·장애발생으로 인한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전국 거점병원에 설치된 One-Stop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조사를 진행 및 피해자 진술녹화 활동 강화, 수사 시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자 대상 교육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 미국 및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현실에 비해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경찰은 수사 상 가장 먼저 피해자를 접하게 되며, 피해자로부터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피해자를 수사함에 있어 주의를 가져야하는 형사사법기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One-Stop 피해자 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다른 피해자 지원시스템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여러 범죄피해 중 회복이 어려운 폭력범죄에 대한 피해회복활동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경찰의 폭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폭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찰의 상황을 살펴보고, 폭력범죄 피해자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제시를 위하여 피해자의 범위를 피해자학에서 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자와 범죄수사 상의 2차 범죄피해자로 한정하였다. 이렇게 한정한 이유는 범죄 및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만,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경찰의 대처방안을 살피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범위의 지나친 확장을 제한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도 다른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많은 범죄피해 중에서도 폭력범죄에 대한 피해로 한정하였으며,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통계, 외국의 선행연구 등을 활용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II. 폭력범죄 피해자보호의 의의

1. 폭력범죄 피해자의 의의

1) 범죄피해자의 정의

범죄피해자란 범죄의 영향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 손해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법적정의를 살펴보면,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의 귀속 주체를 말하며,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이 되며, 보호법익의 주체뿐만 아니라 행위 객체나 범죄수단이 된 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자로 제한되며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범죄도 개인적 법익에 한하지 않고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도 포함한다(박종렬·최환석, 2006: 420).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충실 한다는 차원에서 간접적 피해자도 ‘피해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즉, 형사실체법상으로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피해자’개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이다. 범죄피해로 인한 충격은 간접적인 피해자에게도 심각할 수 있어 그들에 대한 보호활동도 필요한 것이며, 사안에 따라 중요한 증거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력을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박종렬·최환석, 2006: 420-421).

이러한 피해자의 정의를 비롯하여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헌법조항의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 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로 풀이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범죄피해자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는 없고 최소한 ‘범죄행위 완성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고, 단지 사실상,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재판절차 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개념 또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만이 아니라 범죄의 수단이나 행위의 상대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오경식 외, 2011: 13).

그리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위를 직·간접적인 피해로 나누어 정의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범죄든, 범죄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동료, 주변 사람들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에까지 피해를 입히며, 당사자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할 수 있지만 그들 역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은영 외, 2011: 259).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친지까지도 물리적·정신적·재정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의 주변인들까지도 범죄피해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범죄피해를 비롯하여, 수사상 발생하는 2차 피해, 기타 관련 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2차 피해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용한다.

2) 폭력범죄 피해자의 정의 및 특성

(1) 폭력범죄 피해자의 정의

폭력범죄 피해자는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주변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인 범죄피해자의 정의와 큰 차이가 없으나, 폭력범죄에 대한 정의와 유형과 범위로 인하여 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내림에 있어 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경우 폭력행위로 인정되는 폭행, 상해, 살인, 성폭력, 언어적 폭력 등과 같은 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최광의의 폭력범죄를 기준으로 소요죄·내란죄·다중 불해산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 뿐 만 아니라, 가정폭력·성폭력·조직폭력 등 모든 폭력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가정폭력·성폭력 등과 같이 최광의의 폭력범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피해로 정의할 수 있다.

(2) 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폭력범죄로 발생한 피해는 폭력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적 피해·정신적 피해·재정적 피해를 모두 동반하고 있다. 특히 절도·사기·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에 의한 피해와 달리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영향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체적 피해의 경우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며, 정신적 피해의 경우 신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속적인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 폭력범죄는 재산범죄와 달리 피해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폭력피해로 인한 영향은 외상 후 반응으로 나타난다. 외상 후 반응은 강간, 강도, 가정폭력, 절도 등 범죄피해자들은 다른 외상적 사건의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공통된 반응을 나타낸다. 우리가 위협에 처하거나 위협에 직면하면 우리 몸의 응급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교감신경계는 반응으로 인하여 주의집중하거나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힘들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시간과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도 손상되어 혼란감을 느끼고, 대개 초기에는 자신이 경험한 것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끼고 현실을 부정할 수도 있다(강은영 외, 2012: 161).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억압된 감정이 표출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경험된다. 충격, 공포와 두려움, 우울, 분노, 무력감 등, 어떤 정서반응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초기 반응은 적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반응으로 간주되며,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도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반응들이 사라진다. 하지만 일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병리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일부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외상 후 성장(post

traumatic growth)이 일어나기도 한다(강은영 외, 2012: 162).

이렇듯 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는 피해자에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시키는 정신적인 상해를 입히기도 한다. 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피해는 최근 들어 주목받게 되는 영역으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과정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폭력범죄에 의한 정신적 피해는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 이후 특별한 외부의 치료개입 없이도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심각한 정신적 외상형태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정신적 치료사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회복의 속도에 상관없이 정신적인 상처는 언제 재발할지 모르며, 피해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인하여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종합한다면, 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신체에 발생하는 범죄피해와 신체에 발생하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및 기타 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정신적인 피해를 동시에 수반한다.

이중에서 정신적인 피해는 눈에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언제든지 다시 재발하여 생활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꾸준한 형태의 장기적인 치료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회복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폭력범죄에 대하여 장기적인 형태의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영국·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2. 범죄피해와 범죄피해자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분류는 순차적 피해의 발생에 의해 피해를 입는 피해당사자를 1차적 범죄피해자·2차적 범죄피해자로 구분하며,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느냐, 간접적으로 당하느냐에 따라 직접적인 범죄피해·간접적인 범죄피해로 분류한다.

1) 1차적 범죄피해자와 2차적 범죄피해자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기준으로 1차적 피해자와 2차적 피해자의 구분은 범죄피해는 1차적, 혹은 2차적 피해로 구분된다. 1차적 피해는 범죄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하며, 2차적 피해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범죄와 관련해서 겪게 되는 피해를 의미한다(강은영 외, 2011: 159).

다시 말해, 1차적 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자로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리적·정신적·재정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며, 2차적 피해는 범죄의 수사 및 증언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와 거주지의 이주·직장의 이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입은자를 의미한다.

2차적 범죄피해자는 외상적사건의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극심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다시 외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retraumatizing)(강은영 외, 2011: 159).

1차적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일반적으로 범죄 및 사법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피해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인지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으나, 2차적 범죄피해자의 경우 수사 및 조사·증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 사법기관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2차적 피해자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많은 개선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1·2차적 범죄피해자에 대한 분류 뿐 만 아니라 범죄자의 보복 및 재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3차적 범죄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3차적 범죄피해자는 범죄발생이후 처벌을 받은 피해자가 보복을 목적하거나 혹은 과거 저질렀던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어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를 입히는 경우로서 최초 피해를 입었던 1차적 피해자 및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해자의 주변인, 피해자와 대면이 없는 2차적 피해자를 비롯하여, TV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이들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3차적 범죄피해자화라고 할 수 있다.

2) 직접적인 범죄피해와 간접적인 범죄피해

범죄피해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 피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적 피해는 범죄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물리적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근에는 심리적 측정도구의 발달로 인하여 심리적 피해까지도 직접적인 범죄피해로 인정하기도 한다. 직접적 범죄피해는 범죄발생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개연성이 있는 범죄피해를 의미한다.

간접적 피해는 대개 범죄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받는 피해 혹은 범죄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2차적 피해를 의미한다. 간접적 피해자들은 피해 당사자만큼은 아닐지라도,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피해자로 인정받기는커녕 범죄자의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출두하여 진술을 하는 등, 불쾌하고 성가신 절차를 밟게 되기도 한다(강은영 외, 2011: 160).

그러나 간접적 피해는 직접적 피해와 달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 이후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로서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객관적인 피해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접적인 피해는 무엇보다, 범죄피해로 고통을 당한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하는 것, 혹은

범죄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으며, 간접적 피해자도 직접적 피해자와 유사하게 다양한 심리적 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강은영 외, 2011: 160).

3. 폭력범죄 발행 이후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범죄피해 이후,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과정은 개인차가 존재한다. 사건 이후, 특별한 개입 없이도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회복과정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범죄의 강도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범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심리적 장애는 범죄피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Bennice, *et. al.*, 2003; Breslau, 2009; Coker, *et. al.*, 2000; Downs & Rindels, 2004; Green & Diaz, 2007; Green & Pomeroy, 2007; Kernic, *et. al.*, 2000; Lang, *et. al.*, 2004; Rennison & Welchans, 2000; Woods, *et. al.*, 2005; Jennings, *et. al.*, 2011: 1278).

범죄피해로 인하여 겪게 되는 심리적 장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불안(Anxiety Disorder), 우울증(Depression), 해리성 장애(Dissociative Disorders), 자기 파괴적 행동(Self-Destructive Behaviors) 등을 겪게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리적 장애 중 피해자에게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 우울증이 대표적인 증세로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는 피해자들은 범죄사건에 직면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고통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도 1달 이상의 정신적 고통상황이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폭력범죄와 같이 신체적·정신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주 발생하며, 일상생활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은 공포반응이 파괴적이고, 세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공포반응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게 되며 PTSD의 약 80%가 공존병리를 가지는데 흔히 물질남용이나 의존, 주요 우울장애, 공황 장애,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사회공포증, 양극성장애와 공존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특징을 가진다(강은영 외, 2012: 179).

두 번째, 불안(Anxiety Disorder)은 실제로 위협적인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이고 적응적인 측면이 있지만 현실적인 위협이 없는데도 불안을 느끼거나 현실적인 위협에 비해 불안의 정도가 심각하고 혹은 위협요소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과도하게 지속되는 경우, 병적인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병적인 불안이 지속되어 과도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거나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불안장애라고 한다(강은영, 2012: 183).

불안장애는 공황발작(Panic Attack)·공황장애(Panic Disorder),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 사회공포증(Social Phobia), 범불안장애(General Anxiety Disorder)와 같은 심리적 장애를 나타낸다.

세 번째, 우울증(Depression)은 2주 이상 지속되는 심각한 우울증인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와 그보다 경미한 수준에서 2년 이상 지속되는 만성 우울증이라 할 수 있는 기분부전장애(Dysthymic Disorder)로 구분된다. 우울증의 주요 증상에는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나 즐거움 상실과 더불어, 불면증(또는 수면과다), 식욕저하(또는 과식), 정신운동성 초조 또는 지체, 피로감, 무가치감과 죄책감, 집중곤란, 자살사고 등이 포함된다. 우울증은 외상 경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범죄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신체의 상해, 재산의 손실 등의 상실경험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강은영, 2012: 185).

그 밖에 해리성 장애(Dissociative Disorder), 자기 파괴적 행동(Self-Destructive Behaviors) 등이 발생하며, 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유·무형의 물리적 행사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III. 범죄피해자 지원 실태

1. 국내의 범죄피해자 지원 실태

1)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와 소액심판제도,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제도, 배상명령제도, 범죄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제도, 의사사상자 예우 등에 관한 제도 등이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는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및 명예회복 및 기타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나눌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소액심판제도,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제도, 배상명령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 지급명령제도, 긴급지원제도 등이 있다. 그리고 법률지원 및 기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는 무료법률구조제도, 의사상자 예우 등에 관한 제도, 범죄신고자 보호 및 구조제도, 이주여성 긴급지원제도, One-Stop 지원제도 등이 있다.

<표 1>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지원방식	제도	지원내용
금전지원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중 사망, 중증 장애, 중상해 피해자가 범죄피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의 단서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공 등으로 피해자가 된 경우 ·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소액심판제도	·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 건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이 가능케 하는 제도임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제도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가지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함 · 중증 후유장애에 대하여 재활보조금,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장학금, 노부모피부양 보조금 지급
	배상명령제도	· 폭행, 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임 · 해당 사건은 상해, 폭행,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손괴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 가해자 불명인 노상강도, 폭행치상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경우에 최소한의 구제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임
	지급명령제도	· 채권채무, 대여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하여 통상의 판결보다 신속·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하는 제도임.
	긴급지원제도	·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담당자가 확인 후 우선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임.
법률 및 기타지원	무료법률구조제도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구조를 실시함.
	의사상자 예우 등에 관한 제도	·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의사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의료·교육급여 및 취업보호 등을 지원함 · 의사자 또는 의사자 중 등급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시키는 제도임
	범죄신고자 보호 및 구조제도	· 범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고, 신고자에게 신변보호 및 구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이주여성 긴급지원제도	· 이주여성에게 가해지는 여성폭력을 24시간 자국어로 상담, 통역가 능도록 지원하고, 피해로 인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 연계기능을 실시하는 제도임
	One-Stop 지원제도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2) 경찰의 피해자 지원 실태

(1) 경찰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

경찰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무로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지역별 중요 거점병원에 ‘One-Stop 서비스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사 상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과정 상 ‘성폭력 수사전문과정’ 운영, ‘아동성폭력 진술녹화관 자격인증제’,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 시 전문가 참여 및 행동·진술 분석제’등을 실시하여 수사 상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자를 최소화 시키고 있다.

경찰에서 지원하는 피해자 피해회복 및 2차 범죄피해자화를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관인 One-Stop 지원센터에는 여성 경찰관·상담사·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 등의 통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경찰청, 2012: 66).

One-Stop 지원센터에서는 병원진료 후 피해자가 진술녹화 및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센터 내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이중조사 및 수치심 유발을 방지하고 있으며, 피해자 치료 및 증거채취를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영상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피해자 안정을 위해 상담실과 침대·소파를 갖춘 피해자 안정실을 구비하였으며, 법률구조공단이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소속된 전문변호사들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소송지원과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경찰청, 2012: 66-67).

폭력 등 여성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수사연수원에 ‘성폭력 수사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전문수사과정’은 성폭력 조사 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장애인 성폭력 수사전문과정과 여성폭력수사 전문과정을 년 5회 실시하여 170명을 교육하고 있어 성폭력을 전문으로 수사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인권보호 및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매년 2회씩 ‘아동성폭력 진술녹화관 자격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학과 대학교수, NGO 위원 등 전문가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의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고 경찰 진술녹화의 증거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화 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진술의 증명력을 확보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조사를 위해 2010년부터 조사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술과 행동을 분석하는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 시 전문가참여 및 행동·진술 분석제’를 전국 원스톱지원센터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경찰청, 2012: 66).

이렇듯 경찰에서는 범죄피해로 인한 1차적 범죄피해 뿐만이 아니라, 폭력범죄 피해와 같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사로 인한 2차적 범죄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찰의 One-Stop 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

며,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형태의 폭력범죄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방문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2006~2011 One-Stop 지원센터 방문 현황

구분	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기타
2006	4,764	2,868	1,284	48	226	338
2007	9,352	5,701	2,463	105	336	747
2008	10,074	6,818	2,312	70	209	665
2009	10,471	7,140	2,348	116	177	690
2010	13,211	10,265	2,012	134	142	658
2011	12,722	10,169	1,788	110	92	563

※ 자료: 경찰청 홈페이지

그러나 매년 30만건 이상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비해 2011년 집계된 One-Stop 지원센터에 방문한 사람들은 12,722건에 불과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직접 방문건수를 비롯한 비방문 지원을 받은 건수는 56,284건으로 범죄피해자는 직접적인 노출을 꺼려하며, 2차 범죄피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방문식 지원서비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2011년 One-Stop 지원센터 방문자수 및 지원내용

피해유형별 방문자수					
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기타
12,722	10,169	1,788	92	110	563
지원내용(건)					
계	상담	진료	증거채취	진술녹화	피해조서
56,284	28,240	12,528	3,641	4,201	7,674

※ 자료: 경찰백서(2012: 68).

(2) 경찰의 피해자지원 연계활동에 관한 선행연구

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과 긴급보호기관과의 실태를 김지선과 이동원의 연구(2010)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범죄피해 초기단계에서의 긴급한 피해자보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센터가 경찰, 소방서 등 1차적 범죄수사 및 피해자 구조기관과의 업무협조 실태를 <표 4>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자센터가 경찰과의 공조를 센터가 경찰과 같은 긴급보호기관과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업무협조를 한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전체의 과반수에 못 미치는 47.2%만이 업무협조를 하였으며, 업무협조 빈도도 1년에 1-2회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평소 경찰

과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선·이동원, 2010: 258).

경찰과의 공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 55.9%가 경찰과의 협력 및 연계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김지선·이동원, 2010: 258).

실제로, 2009년에 조사된 연구보고서에서는 한 해 동안 긴급보호기관과 업무협조를 한 센터는 전체의 과반수에 못 미치는 47.2%인 25개 센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무협조빈도도 1회와 2회가 각각 7개 센터로 가장 많아 범죄피해 초기단계에서 긴급한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해 가장 원활하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긴급보호기관과 센터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김지선·이동원, 2010: 156-157).

<표 4> 긴급보호기관과의 업무협조 횟수

긴급보호기관과의 업무협조 횟수	빈도	비율(%)
0회	28	52.8
1회	7	13.2
2회	7	13.2
3회	5	9.4
4회	4	7.5
5회 이상	2	3.8
계	53	100.0

※ 자료: 김지선·이동원(2010: 157) 재인용.

한편, 2009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 초기단계에서의 긴급한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해 긴급보호기관과 업무협조를 한 경험이 있는 센터를 대상으로 긴급보호기관의 유형을 파악해본 결과(<표 5>참조), 경찰서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소방서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구청이나 학교, 상담기관과의 업무협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선·이동원, 2010: 157).

<표 5> 긴급보호기관 유형 별 빈도

긴급보호기관 유형	빈도	비율(%)
경찰서	43	6.3
소방서	13	20.6
시군구청	5	7.9
학교	1	1.6
상담소	1	1.6
계	63	100

※ 자료: 김지선·이동원(2010: 157) 재인용.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의 피해자 지원실태를 살펴본 결과, 실제 경찰에서 측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실제 지원과의 관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범죄피해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은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범죄피해를 지원하는 데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김지선·이동원의 연구에서 보았듯 실제 긴급보호기관에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외국의 피해자 지원 실태

1) 영국

영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민간차원에서의 피해자 지원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964년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범죄피해보상계획(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Scheme)을 시행함으로써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보상이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영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권익옹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범죄발생 이후 범죄피해자가 경찰에 사건내용을 신고하게 되면, 경찰은 가능한 신속하게 경찰관을 사건현장에 파견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과 전화번호, 사건 담당부서를 고지한 뒤, 최소 5일 이내에 ‘사건의 피해자(Victim of Crime)’라는 소책자를 배부하고, 수사기간 중 범죄자가 체포되었거나, 주요사안에 대하여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하여 가족의 일원이 사망한 경우나 강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또는 중범죄를 목격한 어린이의 보호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특별훈련을 받은 경찰관을 배치하여 피해자를 보호한다.

그리고 영국은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 제기와 피해자 지원 조직을 통한 형사화해조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상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식의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박종철, 2012: 104).

영국은 기본적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선언한 기본법은 없지만, 피해자 현장이 관련 형사사법기관이나 피해자보호협회(Victim Support Scheme)등의 실무규범으로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은 1993년 피해자 현장과 별도로 ‘검찰청의 피해자 및 증인 처우에 관한 규정(Statement on the Treatment of Victims and Witnesses by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을 제정하였고 1994년에는 ‘검사직무집행규칙(The code for Crown Prosecutors)’을 개정하여 검사는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영국은 1995년 범죄피해구조법(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95)이 제정되면서 정식으로 제도화되어 법무부소속 범죄피해자구조본부에서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민간기관과 경찰, 검찰등과 함께 공조를 통하여 지

원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범죄피해구조금지급기준은 2008년 11월 기준으로,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대상은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이며 교통사고는 제외되는 반면 범인검거활동이나 범죄예방활동 또는 이에 관여는 경찰 등의 원조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포함된다. 가해자가 반드시 유죄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가해자의 처벌과 관련하여 경찰 등 관련 형사사법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하지 않거나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오경식 외, 2011: 37).

보상범위는 일실수입,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의료비 등이 포함되며 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다. 경미한 손해가 아닌 이상 보상의 대상이 되며, 1,000파운드에서부터 최대 250,000파운드까지 지급하며, 사유가 경합될 경우에는 최고한도 500,000파운드까지 지급이 가능하다(오경식 외, 2011: 37).

범죄피해구조금의 신청은 범죄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원칙적으로 범죄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경찰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범죄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며, 접수 후 1년 이내에 그 지급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오경식 외, 2011: 37).

2) 미국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관심이 고조되어 종래 형사사법제도에 서 무시되었던 피해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원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강화하려는 입법적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오경식 외, 2011: 38).

미국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범집행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지원, 대우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정적 지원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민간과 연계된 범죄피해자 보상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특히, 이들은 신체적·정신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들은 경제적 지원 시스템을 국가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1982년의 ‘피해자 및 증인 보호법’(the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이 손해배상명령을 형벌로써 도입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984년의 범죄피해자법(VOCA: victims of crime act)에 의해 범죄피해자기금(crime victims fund)이 창설 되었으며, 이 기금에서 각 주의 피해자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의료비, 심리 카운셀링 비, 피해로 인하여 상실된 수입, 부양비, 장례비, 이사비용, 통원비, 범죄현장의 청소비, 사회복지에 필요한 훈련비용, 피해보상신청을 위한 변호사비용 등이며, 또한 범죄에 의한 장해로

인하여 필요한 주거의 개선비용 및 주거안전시설의 설치비용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널리 실시하고 있다. 미국 역시 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Restorative justice program)을 통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회복적 사법의 과정과 결과물은 높은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yes & Daly, 2004; Jennings, et. al., 2011: 1280).

성공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공갈과 협박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공격자의 죄를 인지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접근하고 있으나 아직 그에 대한 효과적인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사법체계에서도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Jennings, et. al., 2011: 1280).

이렇듯 미국에서는 모든 범죄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단방향적인 회복적 사법이 아닌, 사법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관계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까지 고려한 형태의 회복적 사법을 시행하고 있다.

IV. 경찰의 폭력범죄피해자 보호방안

1. 수사상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방안 확립

많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범죄발생으로 피해자 발생한 자들에 대하여 관련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경찰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조활동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지원센터 전체 57개의 센터 중 46개의 센터의 사무실이 검찰청사 내에 위치해 있으며 센터를 방문하는 상당수의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되어 조사를 받거나,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를 위하여 검찰청에 방문하였다가 검찰청 직원이나 검찰청 내 피해자지원실의 소개를 통하여 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범죄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의 피해자 지원은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찰백서를 비롯한 경찰의 통계자료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실시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살펴본 결과 효과적인 연계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의 경우 경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수사시 2차 피해 예방, 수사 시 정보제공, 범피자로 부터의 보호 등과 같이 수동적 개념의 지원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는 상담가 및 정신과 전문의 등과 같이 정신적 장애 요인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2. 폭력범죄 피해자의 욕구에 맞는 피해자보호 서비스 제공

범죄 피해자는 피해사건 직후 다양한 욕구를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Goodey(2005)는 범죄피해자들이 안심(reassurance) 및 상담, 의학적 도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정적, 실질적 도움, 사건 진행(case progress)에 대한 정보, 법정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 범죄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표현할 기회, 보상과 관련된 도움, 가해자의 석방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고 하였다(강은영 외, 2012: 191-192).

이와 아울러, 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적 장애 및 후유증 발생과 함께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전문적인 활동으로 피해자의 피해 직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범죄사건 직후 사건에 의한 충격으로 인해 냉정한 대응이 불가능하거나 수사에 협력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며, 응급의료·보호, 현장에서의 원조 및 정보제공, 사건현장의 청소, 거처의 마련, 매스 미디어의 접근으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 등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김지선·이동원, 2010: 258).

따라서, 정신적인 장애 상황과 피해로부터 보호 및 복구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폭력범죄 피해자의 욕구에 맞는 피해자 보호 서비스제공이 필수적이다.

특히, 폭력범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보다는 정신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에서는 각 지정병원을 통하여 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서비스제공으로 피해자들이 2차적·3차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3. 경찰의 폭력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응급처치 실시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심리적인 상처의 발생역시 심리적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심리적 응급처치의 목표는 외상적 사건에 의해 충격-혼란단계에 있는 피해자들의 초기 고통을 경감시키고, 장·단기적 적응기능과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Brymer, et. al., 2006; 강은영 외, 2012: 192).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의 욕구상태나 심리적 상처의 반응은 시간이 흐르면서 달리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피해자의 상황을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강은영 외, 2012: 193).

따라서 폭력범죄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가장 먼저 접근하여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경찰의 경우 심리적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심리적 응급처치방법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하여 안전함을 느끼게 한 뒤 접촉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로를 제공한다. 피해자의 안전은 지속적으로 제

공되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최소화하도록 해야한다.

만일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압도되거나 혼란을 느꼈다면 진정시키고 안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렬한 정서적 반응, 강한 신체적 반응, 위험한 행동의 시도 등이 관찰된다면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외상 후 일반적인 반응에 대한 정보라든가, 도움이 되는 대처방법,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약물치료를 안내한다. 필요하다면, 가족과 중요한 타인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정서적 반응에 귀를 기울이면서 참고 견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한다(강은영 외, 2012: 194).

다음으로, 피해자의 현재 욕구와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문제해결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당장의 욕구와 관심사를 파악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강은영 외, 2012: 194).

<표 6> 위기개입의 단계별 지침

1단계: 문제 정의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돌보는 태도를 전달하라. 2. 접촉하라. 3. 위기의 의미를 탐색하라.
2단계: 안전 확보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접적이고 폐쇄적인 질문을 사용하라. 2. 치명성의 정도를 판단하라. 3. 자기 자신, 내담자, 중요한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라. 4. 내담자의 예방적이고 안전한 행동을 강화하라. 5. 당신의 책임에 대해 말하라. 6.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초로 위기분류사정척도를 사용하라.
3단계: 지지 제공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담자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라. 2. 내담자의 가장 최소한의 변화조차도 긍정적으로 강화하라. 3. 외부의 사회적 지지를 찾는 것은 위기 동안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
4단계: 대안 탐색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황에 맞는 지지기제를 활용하라. 2. 이전에 성공적이었던 대처기제를 활용하라. 3. 환경자원을 활용하라. 4.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 패턴을 생성하라. 5. 행동 취하기를 강화하라.
5단계: 계획 수립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적인 목표를 강조하라. 2.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
6단계: 참여 유도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획을 재검토하라. 2. 책임감을 확고히 하라.

※ 자료: 강은영 외(2012: 200).

심리적 응급처치는 피해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는 경찰에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습득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 서포터 전문화과정’을 경찰교육원에서 2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 서포터 전문화과정’에서는 피해자학, 피해자보호 제도 및 법령, 피해자 심리 이해, 피해자 지원 사례연구, 피해자 중심 상담원리, 피해자 면담 실습 등과 같은 전문교육을 실시하

고 있으나, 매년 2주간 5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을 받는 인원이 한 기수에 50명 내외이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고 있다.

4. 정신과 치료를 위한 폭력피해 치료 바우처제도 제안

특히 폭력범죄의 경우 여성과 아동에게 심각한 휴유증을 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수사상의 지원 및 휴유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One-Stop 범죄피해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가 및 정신과 전문의의 경우 예산문제, 업무문제 등으로 인하여 경찰에 소속시키기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타 관련 기관과의 연계활동이 필수적으로 실행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연계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력범죄의 특성 상 지속적인 정신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이 실시되어야 하지만, 단발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여성과 아동의 경우 외부로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보다 쉽게 내원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One-Stop 범죄피해 지원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는 금전적인 이유가 가장 크며,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이 보다 편안하게 정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비밀을 보장받기 위하여 One-Stop 범죄피해 지원센터에 집중되는 심리치료를 분산시켜야 한다.

그 방안으로 본인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지역의 정신과 병원 혹은 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일반 정신과 병원 및 상담센터의 경우 자비를 주고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과 치료용 바우처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바우처제도는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방문, 발달 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폭력범죄에 의한 범죄피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의 경우 '임산부 e-바우처제도'를 모방·차용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정신과 치료용 바우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신과 치료용 바우처제도는 폭력범죄 피해자들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ne-Stop 범죄피해 지원센터'에 집중되었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V. 결론

범죄학이 태동하기 시작부터 모든 범죄학의 관심은 ‘왜 범죄가 발생하는가?’였다. 이후 수 많은 범죄이론들을 통하여 범죄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다양하게 연구가 되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범죄 원인은 결국 범죄자는 신체적 혹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사회환경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의하여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에, 범죄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회 분기가 형성되었다.

반면,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다. 196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피해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하며,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많은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사망·장애발생으로 인한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전국 거점병원에 설치된 One-Stop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일찍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 미국 및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현실에 비해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재정적 피해를 비롯하여 신체적 피해·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특히, 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피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 우울증이 대표적인 증세로 나타난다. 폭력범죄로 인한 심리적 피해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과정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사건 이후, 특별한 개입 없이도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범죄의 강도에 따라 회복과정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폭력범죄 피해를 경찰에서는 One-Stop 피해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백서 등을 통하여 경찰의 피해자 지원의 증가 실적을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경찰의 피해자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며, 심리적 응급처치와 같이 전문적인 활동이 필요한 지원은 더욱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연계기관과의 활동강화, 폭력범죄 피해자와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경찰의 폭력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응급처치 실시를 제안하였다. 연계기관과의 활동강화는 폭력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에게 많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것을 감안하여 민간의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며, 정신적인 피해가 큰 폭력범죄 피해의 특성 상 피해자가 요구하는 범죄피해 지원방식도 달리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여 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찰의 폭력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응급처치 실시의 경우 정신적 응급처치 방식에 대한 부족한 교육을 확대하여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금전적인 문제해결과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에서 지급하는 형태의 폭력범죄 피해지료를 위한 정신과 치료용 바우처제도를 제안하였다. 정신과 치료용 바우처제도는 금전적인 이유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범죄피해를 공개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비밀스러운 치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사 이후 경찰에서는 즉각적인 심리치료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용 바우처의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의한 범죄피해자는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신체적·심리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장 먼저 피해자를 접촉하는 경찰은 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로서, 기존의 선행 연구와 관련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새로운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관련 연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완연구가 필요하다. 보완연구로서 범죄피해자 관련 기관에 대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명확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은영, 권기병, 김대근, 김지영, 박중규, 안성훈, 오경식, 윤정숙, 윤지영, 윤해성, 이동원, 이수정, 이은진, 이천현, 장준오, 정승환, 정유미, 조중신, 최윤경, 허경미, 황태정. 201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 I.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김용세. 2010. 피해자학. 서울: 형설출판사.
- 경찰청. 2013. 경찰백서 2012. 서울: 경찰청.
- 박종렬, 최환석. 2006.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3: 417-442.
- 김지선, 이동원. 2010.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동성과분석 I.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박종철. 2012.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자치경찰연구. 5(1): 130-162.
- 오경식, 신의진, 김혜경, 김지선, 김한균. 2011. 중장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허경미. 2006. 미국의 폭력적 범죄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정책 연구. 피해자학연구. 14(1): 355-385.
- Bennice, J. A., P. A. Resick, M. Mechanic, & M. Austin. 2003. The Relative Effects of Intimate Partner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atology. *Violence and Victims*. 18: 87-94.
- Breslau, N. 2009. The Epidemiology of Trauma, PTSD and Other Post Trauma Disorders. *Trauma Violence & Abuse*. 10: 198-210.
- Brymer, M., A. Jacobs, C. Layne, R. Pynoos, J. Ruzek, A. Steinberg, E. Vernberg, & P. Watson.

2006. *Psychological First Aid: Field Operations Guide 2nd ed*. National Child Traumatic Stress Network and National Center fo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Coker, A. L., P. A. Smith, L. Bethea, M. R. King, & R. E. McKeown. 2000. Physical Health Consequence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Intimate Partner Violence. *Archives of Family Medicine*. 9: 451-457.
- Downs, W. R. & B. Rindels. 2004. Adulthood Depression, Anxiety, and Trauma Symptoms: A Comparison of Women with Nonabusive, Abusive, and Absent Father Figures in Childhood. *Violence and Victims*. 19: 659-671.
- Green, D. L. & N. Diaz. 2007. Predictors of Emotional Stress in Crime Victims: Implications for Trea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3: 194-205.
- Green, D. L. & E. Pomeroy. 2007. Crime Victimization: Assessing Differences between Violent and Non-Violent Experiences. *Victims and Offenders*. 2: 63-76.
- Hayes, H. & K. Daly. 2004. Conferencing and Re-Offending in Queensland.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37: 167-191.
- Kernic, M. A., M. E. Wolf, & V. L. Holt. 2000. Rates and Relative Risk of Hospital Admission among Women in Violent Intimate Partner Relationship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0: 1416-1420.
- Lang, A. J, M. B. Stein, C. M. Kennedy, & D. W. Foy. 2004. Adult Psychopathology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Survivors of Childhood Maltreat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 1102-1118.
- Rennison, C. M. & S. Welchans. 2000. *Intimate Partner Violenc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Woods, A. B., G. G. Page, P. O'Campo, L. C. Pugh, D. Ford, & J. C. Campbell. 2005. The Mediation Effec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on the Relationship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IFN- γ Lev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 159-176.

李河燮: 한성대학교에서 “통일이후 남북한 경찰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1. 2),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및 관심분야는 경찰학, 보안경찰, 통일경찰이며, 현재 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경찰의 산업보안 예방활동에 관한 연구(2012)”, “외국사례를 통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2012)” 등이 있다(sublh@hanmail.net).

수 정 일: 2013년 10월 26일

게재확정일: 2013년 10월 28일

A Study on Support of Victim by Police

Ha Sub Lee

As society develops, crime is constantly on the rise. we are constantly on the rise as the interest for the crime conduct research on the causes of crime, but in recent years, the victim of the damage caused by crime, they began to have an interest in recovery. In our surroundings common violent crime by crime victims are not getting the right protecti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is the lack of support for my static. Be the first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se problems and in contact with the victims of police violence, victims of crime need to be carried out by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pport despite the police's violent crime victims support is still lacking. One-Stop support center is in progress, the violent crime victims assistance, professionalism, my only support static, physical and psychological assistance to victims of violent crime are still lacking. In this study, related institutions and to strengthen cooperation, based on the needs of the victim services support a violent crime, the police violent crime victims ' psychological first aid measures, such as conducting.

Key words: Crime victims, victim support schemes, One-Stop support, violent crime